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5. 30.(수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1 성원보고

2 국기에 대한 경례

3 개회선언

4 지난 회의록 확인

o 제23차 및 제2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5 서면회의 결과보고

o 제25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o 제2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o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⑦ 의결사항

가.「전기통신사업법」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26-243)

o '「전기통신사업법」일부개정안에 관한 건'에 대하여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, 자료제출 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

·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(안 제32조의9 신설)

·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신설(안 제13조제2항 · 제4항 신설)

·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 확대(안 제50조제1항 개정)

·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(안 제50조제1항제4호 · 제5호 · 제5호의2 개정)

· 사실조사 실시 요건 명확화(안 제51조제1항 개정)

나.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26-344～351)

o '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'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개인정보 유·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를 조사('17. 10. 12.～'18. 1. 26.)한 결과,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)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8개 사에 대하여,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<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액 >

사업자명	과태료 금액 (단위 : 만원)
리치인베스트	2,500
㈜제이피컴퍼니	1,500
㈜지세븐인터내셔날	500
카카우드	1,500
㈜태진인터내셔날	1,000
㈜하트잇	2,000
㈜한빛소프트	1,500
휠라코리아㈜	1,500
계	12,000

8 보고사항

가.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‘「전파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추진하기로 원안대로 접수함

나.「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」제정(안)에 관한 사항

o ‘「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」제정(안)에 관한 사항’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「방송법」시행령 제56조의2(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) 및 제54조(공공채널,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)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원안대로 접수함

다.「방송법」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‘「방송법」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하여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현행 방송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원안대로 접수함

※ 방송법 제91조의7(방송의 유지·재개 명령)에 따른 방송의 유지·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제91조제4항 신설)

9 기 타

가. 현안 관련 논의사항

o 공영방송 KBS·MBC의 현안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상임위원 간 논의함

나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회의는 6월 7일(목)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14)